목 포 시

# 시 보

낭만항구 목포
ROMANTIC PORT MOKPO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17호 2025. 11. 17. (월)

## 공 고

○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

| 회람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
발행 : **목포시** 편집 : **홍보과**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공고 제2025-1575호

# 「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**「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**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**「행정절차법」** 제41조 및 **「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」**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1. 17.

**목 포 시 장**

## 1. 개정이유

○ 장기요양기관 지정·갱신 심사기준을 급여 종류의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대표자의 운영 역량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심사 체계 구성

○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준 매뉴얼('25. 4.)에 따라 심사표를 개정함으로써 지자체간 격차 해소

## 2. 주요내용

○ **목적 규정의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**

- "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7항"을 "**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7항 및 제24조**"로 변경

○ 구성 일부 조문 정비 및 규정의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)

- 지정 → 지정 갱신
- 제2항 →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

○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일부 조문 정비(안 제5조)

- 지정 → 지정 및 지정 갱신

○ 장애인 차별 조문 정비(안 제6조)

- 심신장애로 → 사망, 질병 등으로

○ 심사·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9조)

- 별표 1 → 별표 1 또는 별표 2
-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(지정 갱신 70점) 이상인 경우 : 원안 가결
-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(지정 갱신 70점) 미만인 경우 : 원안 부결

○ 별지 삭제 및별표 1, 별표 2 신설

- 별표 1(지정심사기준표) : 급여종류 특성에 따라 분리
- 별표 2(갱신심사기준표) : 신설

3. 개정규칙안 : 붙임 1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
5. 관련부서 의견

○ 예산사항 및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○ 부패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## 6. 입법예고기간 : 2025. 11. 17. ~ 2025. 12. 8.(21일간)

## 7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8일까지 목포시장(노인장애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기일 : 2025년 12월 8일까지

○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
○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의견

○ 제출기관

- 주　　소 :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,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
- 팩　　스 : 061-270-3582
- 전자메일 : lama20@korea.kr

## 7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mokpo.go.kr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노인장애인과(☎061-270-33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「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 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규 칙 안 항목별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 견(사 유) | 기타 참고사항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**붙임 1** **일부개정 규칙(안)**

목포시 규칙 제 호

#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7항”을 “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7항 및 제24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지정하려는 경우”를 “지정 및 지정 갱신 하려는 경우”로 “제2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항제4호 중 “지정”을 “지정 및 지정 갱신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”를 “사망, 질병 등으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 1 또는 별표 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“80점”을 각각 “80점(지정 갱신 70점)”으로 한다.
제12조 본문 중 “「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별지를 삭제하고 별표 1,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.

[별표 1]

#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(제9조 관련)

## 1. 시설/재가급여 (복지용구 제외)

<table>
<tr><th>항목</th><th>세부 기준(안)</th><th>배점</th><th>채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1.<br>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<br>(35점)</td><td colspan="3">심사자료: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,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</td></tr>
<tr><td>1-1.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<br>□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<br><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><br>■ 설치·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(15점)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사회복지사업법</th><th>노인복지법</th><th colspan="2"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th></tr>
<tr><td>15점</td><td colspan="4">행정처분 이력 없음</td></tr>
<tr><td>12점</td><td>개선명령</td><td>경고</td><td>경고</td><td>-</td></tr>
<tr><td>9점</td><td>시설장 교체 1회</td><td>사업정지<br>30일 이하</td><td>업무정지<br>30일 이하</td><td>급여 제공제한<br>6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6점</td><td>시설장 교체 2회</td><td>사업정지<br>30일 초과<br>90일 이하</td><td>업무정지<br>30일 초과<br>90일 이하</td><td>-</td></tr>
<tr><td>3점</td><td>시설장 교체 3회<br>이상</td><td>사업정지<br>90일 초과</td><td>업무정지<br>90일 초과</td><td>급여 제공제한<br>6개월 초과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시설폐쇄</td><td>사업폐지</td><td>지정취소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※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<br>※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<br>※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<br>■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(5점)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th></tr>
<tr><td>5점</td><td>행정처분 이력 없음</td></tr>
<tr><td>3점</td><td>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</td></tr>
</table>
※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<br>※ 설치·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
<tr><td>1-2. 설치·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(휴·폐업 이력)<br>□ 설치·운영자의 잦은 휴·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</th></tr>
<tr><td>5점</td><td>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,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3점</td><td>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,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,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</td></tr>
</table></td><td>5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

**1-3. 설치·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**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·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,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등급별 점수 환산표</th></tr>
<tr><td>① A등급(10점)</td><td>② B등급(8점)</td><td>③ C등급(6점)</td></tr>
<tr><td>④ D등급(4점)</td><td>⑤ E등급, 평가이력 없음(0점)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(6점)</td></tr>
</table>

</td><td>10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2.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(12점)</td><td colspan="3">심사자료: 운영규정, 급여제공지침, 사업계획서 등</td></tr>
<tr><td>

**2-1. 운영 규정,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**

□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, 급여제공지침 등이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5], [별표10]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

</td><td>4</td><td></td></tr>
<tr><td>

**2-2. 직원 교육 계획 수립**

□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,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
(법정의무교육 예시: 인권교육,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)

</td><td>3</td><td></td></tr>
<tr><td>

**2-3. 이용자(수급자)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**

□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,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
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여부

</td><td>3</td><td></td></tr>
<tr><td>

**2-4.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**

□ 시설 입소·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

<table>
<tr><th>급여종류</th><th>점수</th><th>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시설급여<br>(의료서비스 질 제고)</td><td>2점</td><td>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(RN) 배치</td></tr>
<tr><td>1점</td><td>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(RN) 배치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해당 없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재가급여<br>(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)</td><td>2점</td><td>주야간보호, 방문요양,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</td></tr>
<tr><td>1점</td><td>주야간보호, 방문요양을 포함한 2~3종 급여 제공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1종 급여 제공</td></tr>
</table>

</td><td>2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3.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(13점)</td><td colspan="3">심사자료: 운영규정, 사업계획서, 세입·세출 예산서 등</td></tr>
<tr><td>

**3-1. 운영위원회 구성, 개최, 활용 계획의 적정성**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

</td><td>5</td><td></td></tr>
<tr><td>

**3-2.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**

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·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
(세입·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,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,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)

</td><td>8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4.<br>인력관리의<br>체계성 및<br>적절성<br>(10점)</td><td colspan="3">심사자료: 종사자 근로계약서, 운영규정, 사업계획서 등</td></tr>
<tr><td>4-1.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<br>□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<br>* 단,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 요건을 명시한 경우,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<br><table><tr><th>점수</th><th colspan="2">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</th></tr><tr><td>5점</td><td>충족</td><td>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</td></tr><tr><td>0점</td><td>미충족</td><td>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되지 않음</td></tr></table></td><td>5</td><td></td></tr>
<tr><td>4-2.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<br>□ 연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<br>□ 성희롱·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마련 여부<br>□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(포상, 휴가 등) 마련 여부</td><td>5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5. 지자체별<br>심사항목<br>(10점)</td><td colspan="3">심사자료: 운영규정, 사업계획서 등</td></tr>
<tr><td>5-1. 설치·운영자의 노인복지분야 서비스 제공 전문성<br><table><tr><th>점수</th><th>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</th></tr><tr><td>6점</td><td>노인복지 실무경력 10년 이상</td></tr><tr><td>3점</td><td>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~ 10년 미만</td></tr><tr><td>0점</td><td>노인복지 실무경력 없거나 5년 미만</td></tr></table></td><td>6</td><td></td></tr>
<tr><td>5-2. 대표자의 근무 형태<br><table><tr><th colspan="3">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</th></tr><tr><td>① 시설장 : 2점</td><td>② 근무없음 : 0점</td><td>③ 종사자 근무 : -2점</td></tr></table>* 근로기준법상 사용자(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)는 대표자에 해당되며, 대표자가 채용한 시설장의 하급(종사)자로 근무하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관리 수행이 어려움</td><td>2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6. 대표자<br>대면평가<br>(20점)</td><td colspan="3">면접심사</td></tr>
<tr><td>6-1.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</td><td>4</td><td></td></tr>
<tr><td>6-2.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·공익성 등</td><td>4</td><td></td></tr>
<tr><td>6-3.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</td><td>4</td><td></td></tr>
<tr><td>6-4.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</td><td>4</td><td></td></tr>
<tr><td>6-5.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td><td>4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※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<u>80점 이상</u>이어야 함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총점 : _____ 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20 . . . 심사위원 : _____ (서명)</td></tr>
</table>

## 2. 복지용구

<table>
<tr><th>항목</th><th>세부 기준(안)</th><th>배점</th><th>채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1.<br>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<br>(35점)</td><td colspan="3">심사자료 :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,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</td></tr>
<tr><td>1-1.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<br>□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<br><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><br>■ 설치·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(15점)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사회복지사업법</th><th>노인복지법</th><th colspan="2"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th></tr>
<tr><td>15점</td><td colspan="4">행정처분 이력 없음</td></tr>
<tr><td>12점</td><td>개선명령</td><td>경고</td><td>경고</td><td>-</td></tr>
<tr><td>9점</td><td>시설장 교체<br>1회</td><td>사업정지<br>30일 이하</td><td>업무정지<br>30일 이하</td><td>급여 제공제한<br>6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6점</td><td>시설장 교체<br>2회</td><td>사업정지<br>30일 초과<br>90일 이하</td><td>업무정지<br>30일 초과<br>90일 이하</td><td>-</td></tr>
<tr><td>3점</td><td>시설장 교체<br>3회 이상</td><td>사업정지<br>90일 초과</td><td>업무정지<br>90일 초과</td><td>급여 제공제한<br>6개월 초과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시설폐쇄</td><td>사업폐지</td><td>지정취소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※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<br>※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<br>■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(5점)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th></tr>
<tr><td>5점</td><td>행정처분 이력 없음</td></tr>
<tr><td>3점</td><td>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</td></tr>
</table>
※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<br>※ 설치·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
<tr><td>1-2. 설치·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(휴·폐업 이력)<br>□ 설치·운영자의 잦은 휴·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</th></tr>
<tr><td>5점</td><td>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,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3점</td><td>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,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,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</td></tr>
</table></td><td>5</td><td></td></tr>
<tr><td>1-3. 설치·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<br>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·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,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
<table>
<tr><th colspan="3">등급별 점수 환산표</th></tr>
<tr><td>① A등급(10점)</td><td>② B등급(8점)</td><td>③ C등급(6점)</td></tr>
<tr><td>④ D등급(4점)</td><td colspan="2">⑤ E등급, 평가제외 등(0점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(6점)</td></tr>
</table></td><td>10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2.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</td><td colspan="3">심사자료 : 운영규정, 사업계획서 등</td></tr>
<tr><td>2-1. 운영 규정,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<br>□ 제품안내·유통,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</td><td>10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적절성<br>(20점) | 2-2. 직원 교육 계획 수립<br>□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(법정의무교육 예시: 인권교육,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) | 2 | |
| | 2-3. 이용자(수급자)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<br>□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,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 | 8 | |
| 3.<br>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<br>(5점) | 심사자료 : 운영규정, 사업계획서, 세입·세출 예산서 등 | | |
| | 3-1.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<br>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·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 (세입·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,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) | 3 | |
| | 3-2.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<br>□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수립 여부<br>□ 성희롱·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<br>□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(포상, 휴가 등) 마련 여부 | 2 | |
| 4.<br>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<br>(20점) | 심사자료 :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, 평면도, 제품 수불부대장, 제품 A/S 대장 등 | | |
| | 4-1.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<br>□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관련 계획수립 및 담당지정 여부 | 8 | |
| | 4-2.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<br>□ 소독매뉴얼, 소독에 필요한 용구(소독액, 소독장비 등) 구비 여부<br>□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 | 8 | |

| 점수 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---|
| 8점 | 매우우수 | 자체, 자체+위탁 : 매뉴얼·용구·장비 충실히 마련<br>위탁 :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 |
| 6점 | 우수 | 자체, 자체+위탁 : 매뉴얼·용구·장비 적절히 마련 |
| 4점 | 보통 | 자체, 자체+위탁 : 매뉴얼·용구·장비 마련 |
| 2점 | 미흡 | 자체, 자체+위탁 : 매뉴얼·용구·장비 미흡<br>위탁 : 위탁 증명 서류 미흡 |
| 0점 | 매우미흡 | 자체, 자체+위탁, 위탁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소<br>(매뉴얼·용구·장비와 위탁 서류가 없음)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| 4-3.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<br>□ 복지용구 전시·체험·보관 등 공간 확보<br>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(수불부·A/S대장 등) | 4 | |

| 점수 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---|
| 4점 | 매우우수 |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충실하게 마련 |
| 3점 | 우수 |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마련 |
| 2점 | 보통 | 공간 또는 관리 서류 중 한 가지가 미흡 |
| 0점 | 미흡 |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미흡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5. 대표자 대면평가<br>(20점) | 면접심사 | | |
| | 5-1.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| 5 | |
| | 5-2.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·공익성 등 | 5 | |
| | 5-3.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| 5 | |
| | 5-4.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 5 | |

※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**80점 이상**이어야 함

총점 : _____ 점

20 . . . 심사위원 : _____ (서명)

[별표 2]

#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(제9조 관련)

## 1. 시설/재가급여 (복지용구 제외)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세부 기준(안)</th><th>배점</th><th>채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1.설치<br>·운영자 및<br>종사자의<br>서비스 제공<br>능력<br>(40점)</td><td colspan="3">심사자료: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,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</td></tr>
<tr><td>1-1.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(최근 6년 이내)<br>□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<br><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><br>■ 설치·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(15점)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사회복지사업법</th><th>노인복지법</th><th colspan="2"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th></tr>
<tr><td>15점</td><td colspan="4">행정처분 이력 없음</td></tr>
<tr><td>12점</td><td>개선명령</td><td>경고</td><td>경고</td><td>-</td></tr>
<tr><td>9점</td><td>시설장 교체 1회</td><td>사업정지<br>30일 이하</td><td>업무정지<br>30일 이하</td><td>급여 제공제한<br>6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6점</td><td>시설장 교체 2회</td><td>사업정지<br>30일 초과<br>90일 이하</td><td>업무정지<br>30일 초과<br>90일 이하</td><td>-</td></tr>
<tr><td>3점</td><td>시설장 교체 3회<br>이상</td><td>사업정지<br>90일 초과</td><td>업무정지<br>90일 초과</td><td>급여 제공제한<br>6개월 초과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시설폐쇄</td><td>사업폐지</td><td>지정취소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※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<br>※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<br>※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<br>■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(5점)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th></tr>
<tr><td>5점</td><td>행정처분 이력 없음</td></tr>
<tr><td>3점</td><td>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</td></tr>
<tr><td>0점</td><td>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</td></tr>
</table>
※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<br>※ 설치·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
<tr><td>1-2. 설치·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<br>□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,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.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<br>※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(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)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
<table>
<tr><th colspan="3">등급별 점수 환산표</th></tr>
<tr><td>① A등급(15점)</td><td>② B등급(12점)</td><td>③ C등급(9점)</td></tr>
<tr><td>④ D등급(6점)</td><td colspan="2">⑤ E등급, 평가이력 없음(미실시·거부 등)(0점)</td></tr>
</table></td><td>15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**1-3. 설치·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(휴·폐업 이력)**

□ 설치·운영자가 최근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·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

□ 휴업의 경우,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 일 때 해당

① 휴업이력(2점)

| 점수 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
|---|---|
| **2점** |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,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|
| **1점** |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,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|
| **0점** |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,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|

② 폐업이력(3점)

| 점수 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
|---|---|
| **3점** |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|
| **2점** | 폐업 이력이 2회 |
| **0점** |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|

5

**2.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(16점)**

심사자료 : 운영규정, 사업계획, 결과보고서 등

**2-1.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**

□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

※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(6년) 기준으로 하되,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사업계획(2점) | ① 연간 사업(운영)계획 수립 여부 | **2점** |
| 정기평가 (2점) |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| **1점** |
| |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| **1점** |

4

**2-2.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**

□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, 급여제공지침,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

□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,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

① 노인인권교육(매년 4시간 이상) ② 노인학대예방교육(1시간 이상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교육 실시 |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 | **1점** |
| 교육 지원 |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| **1점** |

※ ①,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**미실시 경우 '교육실시' 항목 0점**

2

**2-3. 수급자(이용자)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**

□ 수급자 고충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,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

□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(1)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|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규정 마련 | **1점** |
| |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절차 운영 | **1점** |
| (2) 개인정보 보호 |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| **1점** |
| | ② 기록물 별도 보관 등의 조치 시행 여부 | **1점** |
| |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| **2점** |

6

**2-4.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**

□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급여제공계획과 기록,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

□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감염병 및 위험요소의 예방·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

(1) 서비스 관리(2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| 1점 |
|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| 1점 |

(2) 감염병 및 위험 관리(2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입소형 기관 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포함) |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,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 | 1점 |
| |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| 1점 |
| 방문형 기관 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|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·교육을 실시 | 1점 |
| | ② 수급자(보호자)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 | 1점 |

4

**심사자료 : 사업계획, 운영규정, 시설 현황 등**

**3-1.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**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 및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5,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

(1) 운영위원회 구성(2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| 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| 1점 |
| |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됨 | 1점 |
| 재가장기요양기관 | 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| 1점 |
| |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 | 1점 |

(2) 운영위원회 실시(2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| 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| 1점 |
| | ② 운영위원회 논의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, 중요사항을 시군구에 제출·보고함 | 1점 |
| 재가장기요양기관 | ①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개최 | 1점 |
| | ②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| 1점 |

4

**3-2.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**

□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

(1) 회계운영(4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|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, 신원보증보험 가입, 관련 교육실시 | 2점 |
| | ② 수입·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| 2점 |
| 재가장기요양기관 |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, 관련 교육실시 | 2점 |
| | ② 현금출납부, 총계정원장을 관리 | 2점 |

8

3.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(16점)

(2) 재정운영(4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| ①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. | 2점 |
| |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,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| 2점 |
| 재가장기요양기관 | ①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 | 2점 |
| |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,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| 2점 |

**3-3.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**

□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

(1) 재해예방(2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① 재해발생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| 1점 |
| ② 재해발생대비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| 1점 |

(2) 안전관리(2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입소형 기관 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포함) | 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, 관련 교육 실시 | 1점 |
| |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| 1점 |
| 방문형 기관 (방문요양·목욕·간호) | ① 시설장이 종사자, 수급자(보호자)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 | 2점 |

4

**4.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(16점)**

심사자료 : 사업계획, 운영규정, 인력 현황 등

**4-1.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**

※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

□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,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

(1) 고용계약(2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| 1점 |
|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준수 여부 | 1점 |

(2) 급여수준(7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①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| 4점 |
|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 | 2점 |
|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| 1점 |

9

**4-2.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,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**

□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,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확인

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(3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(연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)를 위한 지원 여부 | 1점 |
|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여부 | 2점 |

② 고충처리(4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①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여부 | 2점 |
| ②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여부 | 2점 |

7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5.<br>설치·<br>운영자<br>대면평가<br>(12점) | 면접심사 | | |
| | 5-1. 제반 관련 규정 - 행정처분 관련 | 4 | |
| | 5-2.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- 기관평가 관련 | 4 | |
| | 5-3. 기타 기관 운영실적 | 4 | |
| | ※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, 기본 점수(12점)로 부여 | | |
| ※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| | | |
| 총점 : _____ 점 | | | |
| 20 . . . 심사위원 : _____ (서명) | | | |

## 2. 복지용구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세부 기준(안)</th><th>배점</th><th>채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1.<br>설치<br>·운영자 및<br>종사자의<br>서비스 제공<br>능력<br>(40점)</td><td colspan="2">심사자료 :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 제공 이력 등</td></tr>
<tr><td>

**1-1.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(최근 6년 이내)**

□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

<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>

■ 설치·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(15점)

| 점수 | 사회복지사업법 | 노인복지법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| |
|---|---|---|---|---|
| 15점 | 행정처분 이력 없음 | | | |
| 12점 | 개선명령 | 경고 | 경고 | - |
| 9점 | 시설장 교체 1회 | 사업정지 30일 이하 | 업무정지 30일 이하 |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|
| 6점 | 시설장 교체 2회 |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|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| - |
| 3점 |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| 사업정지 90일 초과 | 업무정지 90일 초과 |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|
| 0점 | 시설폐쇄 | 사업폐지 | 지정취소 | - |

※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

※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

※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

■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(5점)

| 점수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|
|---|---|
| 5점 | 행정처분 이력 없음 |
| 3점 |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|
| 0점 |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|

※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

※ 설치·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

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
<tr><td>

**1-2. 설치·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**

□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,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.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

※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(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)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

| 등급별 점수 환산표 | | |
|---|---|---|
| ① A등급(15점) | ② B등급(12점) | ③ C등급(9점) |
| ④ D등급(6점) | ⑤ E등급, 평가이력 없음(미실시·거부 등)(0점) | |

</td><td>15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**1-3. 설치·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(휴·폐업 이력)**

□ 설치·운영자가 최근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·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

□ 휴업의 경우,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

① 휴업이력(2점)

| 점수 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
|---|---|
| **2점** |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,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|
| **1점** |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,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|
| **0점** |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,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|

② 폐업이력(3점)

| 점수 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
|---|---|
| **3점** |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|
| **2점** | 폐업 이력이 2회 |
| **0점** |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|

5

**2.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(16점)**

심사자료 : 운영규정, 사업계획, 결과보고서 등

**2-1.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**

□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

※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(6년) 기준으로 하되,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연간사업계획(2점) | ① 연간 사업(운영)계획 수립 여부 | **2점** |
| 정기평가 (2점) |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| **1점** |
| |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| **1점** |

4

**2-2.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**

□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, 급여제공지침,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

□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,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

① 노인인권교육(매년 4시간 이상) ② 노인학대예방교육(1시간 이상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교육 실시 |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 | **1점** |
| 교육 지원 |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| **1점** |

※ ①,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**미실시 경우 '교육실시' 항목 0점**

2

**2-3.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**

□ 수급자 고충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,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

□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(1)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|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규정 마련 | **1점** |
| |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절차 운영 | **1점** |
| (2) 개인정보 보호 |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| **1점** |
| | ② 기록물 별도 보관 등의 조치 시행 여부 | **1점** |
| |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| **2점** |

6

**2-4.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**

□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기적 제공계획과 기록,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

□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,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

① 서비스 관리(2점) *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·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(1) 복지용구를 판매·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여부 | 1점 |
| (2)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<br>- 구입제품 : 제공할 때<br>- 대여제춤 :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이용자 방문 | 1점 |

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(2점) *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(1) 소독방법,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,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, 필요한 소독을 실시 | 1점 |
| (2)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 | 1점 |

4

**심사자료 : 사업계획, 운영규정, 시설 현황 등**

**3-1.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**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6조 및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5,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

① 운영위원회 실시(4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(1) 복지용구 전시·체험·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 | 2점 |
| (2)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(수불부대장, A/S대장 등) 기록 여부 | 2점 |

4

**3-2.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**

□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

① 회계운영(4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(1) 회계담당자의 지정, 관련 교육실시 여부 | 2점 |
| (2) 현금출납부,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| 2점 |

② 재정운영(4점)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
|---|---|
| (1) 예·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 여부 | 2점 |
| (2)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,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| 2점 |

8

**3-3.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**

□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

|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| | |
|---|---|---|
| ① 재해예방 |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 | 2점 |
| ② 안전관리 | 시설장이 종사자, 수급자(보호자)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| 2점 |

4

3.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(16점)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4.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(16점) | 심사자료 : 사업계획, 운영규정, 인력 현황 등 | | |
| | **4-1.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**<br>※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<br>□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,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<br>① 고용계약(2점)<br>※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<br>**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**<br>(1)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**1점**<br>(2)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**1점**<br>② 급여수준(7점) - ①문항 기본점수 부여<br>**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**<br>(1)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**4점**<br>(2)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 **2점**<br>(3)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**1점** | 9 | |
| | **4-2.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,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**<br>□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,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<br>※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<br>**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**<br>건강관리 및 복리후생(3점)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(연1회 이상 건강검진 등)를 위한 지원 여부 **1점**<br>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여부 **2점**<br>고충처리 (4점) ①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여부 **2점**<br>②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 **2점** | 7 | |
| 5. 설치·운영자 대면평가 (12점) | 면접심사 | | |
| | **5-1. 제반 관련 규정-행정처분 관련** | 4 | |
| | **5-2.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-기관평가 관련** | 4 | |
| | **5-3. 기타 기관 운영실적** | 4 | |
| ※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| | | |
| **총점** : _____ 점 | | | |
| 20 . . . **심사위원** : _____ (서명) | | | |

**붙임 2** **신 · 구조문 대비표**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7항 및 제24조----------. |
| 제2조(설치) 목포시장은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한다. | 제2조(설치) ---------- 지정 및 지정 갱신 하려는 경우----------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제2항----------. |
| 제5조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・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| 제5조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) ① 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
| | |
|---|---|
| 4.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| 4. ---------- 지정 및 지정 갱신 ---------- |
| ②·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| 제6조(위원의 해촉) ----------. |
|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| 1. 사망, 질병 등으로---------- |
| 2. ~ 5. (생 략) | 2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제9조(심사·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. | 제9조(심사·의결) ① ---------- 별표 1 또는 별표 2----------. |
|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| ② ----------. |
| 1.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: 원안 의결 | 1. ---------- 80점(지정 갱신 70점) ----- |
| 2.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 | 2. ---------- 80점(지정 갱신 70점) |

| | |
|---|---|
| 우: 부결.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 | --. ----------.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| 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 ---------- 「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---------. ----------. |